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4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B

2. C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3. 2. 14.

판결 선고2023. 4. 2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2,289,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2.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일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D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부이다.

나. 원고는 2017. 9. 18.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7. 9. 16.부터 2018. 9.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지점이 의뢰하는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운송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8. 8. 16.경까지 피고 B 측에 입금한 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2018. 2. 26.	E D1월선지급	2,213,500
2	2018. 2. 26.	E D1월선지급	87,500
3	2018. 3. 7.	E D2월선지급	1,127,000
4	2018. 3. 15.	E D1월운송료	46,663,990
5	2018. 3. 26.	E D2월선지급	2,213,500
6	2018. 3. 26.	E D2월선지급	87,500
7	2018. 4. 17.	E D2월운송료	970,720
8	2018. 4. 24.	E D3월선지급	60,500
9	2018. 4. 25.	F D3월선지급	275,500
10	2018. 4. 25.	F D3월선지급	500,500
11	2018. 5. 15.	G C3월운송료	7,455,860
12	2018. 6. 18.	E D4월운송료	9,430,580
13	2018. 7. 16.	F D5월운송료	7,122,168
14	2018. 7. 16.	F D5월운송료	654,012
15	2018. 8. 16.	H D6월운송	7,941,620
계	86,804,4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8. 3. 15. 입금한 46,663,990원은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한 것인데(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이는 이 사건 운송대행계약 운송료가 아니고, 원고가 착오로

'0'을 하나 더 입력하여 과다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 것이다.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이 사건 운송대행계약 수수료로 44,514,745원을 산정하고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 착오 입금으로 인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고 B 측에 위 6개월분 운송대행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총 86,804,450원을 입금하여 결과적으로 42,289,70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입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42,289,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① D이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원고의 운송 기사로 일하고 받지 못하였던 미지급 급여 10,500,000원, ② 2018년 6월경 원고와 피고 B 측 사이의 이 사건 운송대행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차량임대보증금 반환금 10,000,000원 및 ③ 201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피고 B 등이 정산받아야 할 나머지 운송대행계약 수수료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B 측에 지급하였던 통상적인 운송료의 액수에 비하여 원고가 2018. 3. 15. 피고 C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현저히 과다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돈 중에서 정당한 운송료 상당의 돈을 제외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 입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착오 입금액은 원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2. 26.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고 B 측에 입금한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6개월분 운송대행계약 수수료 명목의 돈 총 86,804,450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정당한 운송료 44,514,745원을 공제한 42,289,705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와 1)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42,289,70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7.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① D의 미지급 급여가 정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③의 각 금원이 정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 역시 없다(특히 이 사건 금원의 입금일은 2018. 3. 15.인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②, ③의 각 금원 정산의 기준일은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대행계약이 종료된 때인 2018년 6월 무렵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②, ③의 각 금원 정산을 위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기홍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계좌를 'E'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B도 이 사건 금원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으로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피고 B 측에 이 사건 운송대행계약 수수료를 지급한 마지막 날 다음날이다.